

- 목 차 -

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실적

2007. 5.

- 1. 보건복지정책의 미래전략 「사회투자정책」 추진 ..... 1
- 2.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건강투자전략 ..... 2
- 3.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..... 3
- 4. 새 출발의 닳을 올린 국민연금 개혁 ..... 4
- 5. 저출산·고령사회 대책 추진 ..... 5
- 6. 장애인제도의 근본적 제도 개선 ..... 6
- 7. 의료급여제도의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..... 7
- 8.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 ..... 8
- 9.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..... 9
- 10.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..... 10
- 11. 한·미 FTA 협상 ..... 11
- 12. 국제협력 :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와 남북협력 ..... 12
- 13. 34년만의 의료법 전면 개정 ..... 13



## 1. 복지정책의 미래전략, 사회투자정책 추진

□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드는 「사회투자정책」

### ◇사회투자정책이란?

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사회참여와 통합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

○ 사회투자국가는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지향

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, ②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, ③사회통합을 위한 기초투자, ④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

□ 사회투자정책의 본격 시행

○ 건전한 아동 육성을 위한 희망스타트 프로젝트,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획(CDA) 제도

○ 인적자본 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: 노인, 장애인, 산모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

○ 생애전환기 연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사업 등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투자 확대

○ 사회안전망 내실화, 국민연금 개혁,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기초 투자 강화

○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

## 2.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건강투자 전략

□ 국민의 건강을 국가(사회·개인이 함께) 책임지는 「건강투자전략」

### ◇ 건강투자 전략이란?

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, 인적자본의 필수요소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과 선순환된다는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이는 전략

○ 건강투자 전략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치료보다는 건강 그 자체를 달성하는 것을 국가정책의 주요방향으로 삼는 것

① 금연·절주 등 생활행태의개선, ② 질병의 조기발견, 자기능력 제고 등 질병관리, ③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, ④ 건강유해요인 차단과 건강을 지지하는 환경조성 등 4대 영역에 중점투자

□ 「건강투자전략」 :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인 건강투자체계 구축

○ 아동·청소년 : 임신·출산 Total Care,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, 취약계층 영양 지원, 학교보건 국가지원 체계 강화 등

○ 청·장년층 : 지역산업보건센터 확충, 지역사회 중심으로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,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확대 등

○ 노년층 :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, 노인영양지원사업,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, 가정간호 서비스 등

### 3.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

#### □ 어르신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도입

-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
  - ※ 기초노령연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('07.4.2) 및 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('07.4.24)
- 2008년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약 60%인 300여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%('08년 8.9만원)를 매월 지급
  - ※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변화 추이 :  
'08년 8.9만원 → '10년 10만원 → '20년 17.7만원 → '30년 30만원
  - '08년 1월 70세 이상 우선 지급 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
- 기초노령연금 도입 후 공적 노후소득 보장률은 '05년 30.8%에서 '08년 78.2% → '20년 90.2% → '30년 98%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

#### □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

-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대상자에게 신체활동·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국회 통과('07.4.2)
- '05년 7월부터 '08년 6월까지 3차년에 걸쳐 「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」 실시
  - '05년 : 6개 → '06년 : 8개 → '07년 13개 지역으로 확대
  - 제도 시행에 필요한 수발인정·등급 판정, 수가·급여 체계 모형 개발
- '08년 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 수요 충족을 위하여 '03년부터 매년 100개소씩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을 지원

### 4. 새 출발의 닳을 올린 국민연금 개혁

#### □ 국민연금법개정안 핵심내용

-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계를 적정하게 내고 적정하게 받는 체계로 개선
- 보험료율은 현행 9%에서 2009년부터 매년 0.39%포인트씩 인상하여 2018년까지 12.9%로 조정하며,
  - 급여율은 현행 60% 수준에서 2008년까지 50%로 조정

#### □ 갈 길 먼 국민연금 개혁

- 3년여에 걸친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2006년말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

#### <개정법안의 세 가지 의미>

- ▲ 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 토대 구축
- ▲ 고령빈곤문제 해소의 기반 조성
- ▲ 모범적인 연금개혁 사례로 평가

- '07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개정안 부결
  - 각 정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의지를 표명하고,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처리 무산
- 고령화에 대비한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및 미래의 여유 있는 삶을 위해 연금개혁은 반드시 풀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

## 5. 저출산·고령사회 대책 추진

### □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기반 마련

- 저출산·고령화 대응을 위한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대책인 “새로마지 플랜 2010” 「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(’06~’10)」을 수립(’06. 8월)
  - ’06년~’10년간 총 32원을 투자, 출산을 하락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242개 세부사업을 추진
  - 정책 수립 이후 후속조치로서 ’07년도에 총 7조 3,132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출산·고령사회에 대비한 사업 지원

### □ 주요 정책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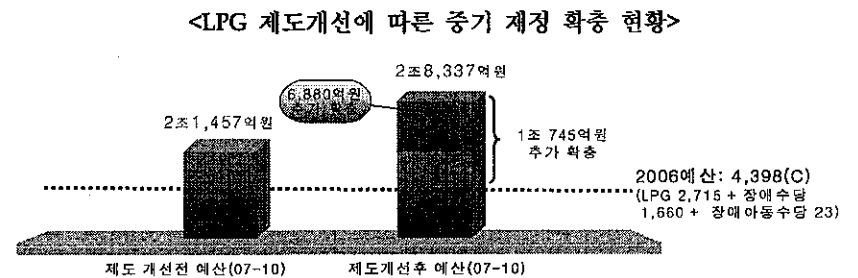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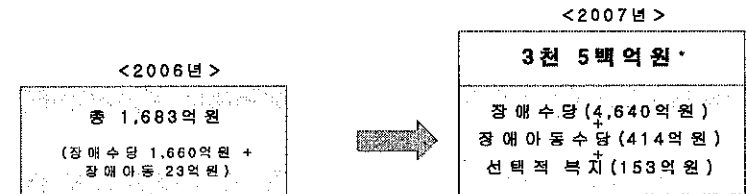
- 저출산 대책 사업
  - 산모도우미 지원가정을 37,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불임부부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
  -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
  - 육아휴직수당 인상, 직장보육시설 확충
  - 초·중·고생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확대,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제도 개선 사업 추진 등
- 고령화 대책 사업
  -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지역 확대,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
  - 노인 일자리를 ’06년 8만개에서 ’07년 11만개로 확대
  -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확대, 노인돌보미 사업 신규 추진
  - 고령사회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‘고령친화모델지역’ 시범사업 추진

## 6. 장애인제도의 근본적 제도 개선

- 매년 급증하는 LPG 차량 및 지원예산, 차량운영이 가능한 일부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도모



-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예산 3,500억원을 ’06년 추가로 확보하여,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도 인상



## 7. 의료급여제도의 관리운영체계 선진화

### □ 의료급여 제도의 혁신 필요성

- 의료급여 예산은 규모가 크고, 증가율 또한 20%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 '06년도 의료급여 총지급액은 3.5조원 수준

#### > 연도별 의료급여 예산 증가 추이

구분	'02	'03	'04	'05	'06	'07
총액(억원)	22,119	23,073	24,631	29,057	34,885	46,753

- ▶ 현재의 증가추세(매년 20%)유지 가정시 '15년에는 20.5조원에 달할 전망

### □ 의료급여제도 혁신의 추진내용

-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급권자 적용 확대 및 급여범위 확대
  -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20만 명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대
-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과 의료기관 의료제공 행태 건전화
  - 365일 초과 이용자 38만명 의료이용 실태조사 실시,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의 중복 투약 방지 및 적정 의료이용 유도
  - 수급자 자격 확인과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전산 인프라 재정비
- ※ 매년 24%씩 증가하던 청구진료비 증가율이 21.3%로 감소하는 가시적인 효과
- 본인부담제, 병의원 선택제도, 자격관리시스템(의료기관-건보공단-시·군·구 연계)을 통한 급여일수 실시간 확인 등을 통해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법령 개정

## 8.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

### □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필요성

- 국민의 복지수요가 다원화 되고 있는데 반해, 지자체 등 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급자 중심으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
- 중앙부처 서비스의 읍면동 집중 현상으로,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과중 및 찾아가는 전문적 서비스 제공 미흡

### □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

- '06년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(행자부에 추진단 설치)으로 주민 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 추진
  - 시·군·구에 보건·복지·고용·주거 등 8대 서비스 업무를 통합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,
  -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팀 설치 및 인력 확대배치로 심층상담, 현장방문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

#### ☞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?

복지·보건서비스 이외에 고용·주거·평생교육·생활체육·문화·관광 등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복지개념

### □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업그레이드

- 통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연계·제공하는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
- '주민생활지원포털'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정보제공

## 9.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

### □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

- 암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
  - 5대 암(위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) 환자의 건강검진 본인부담을 20%로 대폭 경감
- 미래의 희망, 어린이의 건강 배려
  -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면제
- 입원환자 식대부담 경감
  -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에서 80%까지 부담하여 모든 환자의 입원비 부담을 낮춤

#### <200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항목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원환자식대 건강보험 적용('06.6)</li> <li>• 암 등 중증질환자의 지속적 보장성 강화</li> <li>• 뇌혈관·심장질환의 중재적 시술 보험 적용('06.1)</li> <li>•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('06.1)</li> <li>• 간장, 췌장, 폐 등 장기이식시 적출술 및 이식술 건강보험 적용('06.1)</li> <li>• PET 건강보험 적용('06.6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</li> <li>• 6세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 면제('06.1)</li> <li>•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(9종, '06.1)</li> <li>• 소이, 무이종('06.1.16)</li> <li>• 가정에서의 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('06.11)</li> <li>• 전액 본인부담(100/100) 행위, 치료재료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('06.1)</li> <li>• 내시경 수술재료 보험급여화('06.6)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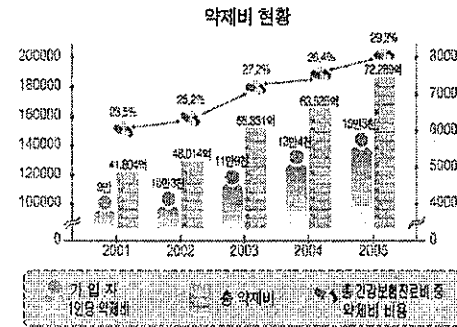
### □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인 추진

- 아동·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
- 임신부 토탈 케어 등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
- 보건 의료 고용창출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

## 10.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

### □ 건강보험의 약제비 지출 증대

- '05년 총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은 29.2%로 '01년 이후 매년 14.6%씩 증가하여 약제비 지출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



- 약제비 증가의 원인은 의약품 사용량 증가와 고가약 사용에 있음
  - 혁신적 고가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용이한 반면, 가격 결정 후 변동요인 반영기제는 미흡

### □ 건강보험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

- 보험의약품 등체계를 선별등재방식(Positive list system)으로 전환하여 '11년 까지 약제비 비중을 24%이하로 경감
- 최초 복제약의 가격은 신약의 80%를 주던 것을 68%로 인하하고,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 신약의 가격을 20% 인하
- 보험이 적용된 후 사용량이 늘어나는 경우 다시 협상하여 가격을 조정
- 항생제나 주사제의 처방률, 고가약의 사용정도, 투약일당 약제비 등을 망라하여 적정성 평가를 확대
- 약효 재평가를 강화하고, 의약품 제조업소의 KGMP(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) 차등평가제 지속적 실시

## 11. 보건의료분야 한미 FTA 협상

지킬 것은 지키고 찾을 것은 찾았습니다.

### 1. 중요한 것은 지켜냈음

- ▷ 신약의 최저가 보장 (불수용)
- ▷ 약물경제성 평가 유예 (불수용)
- ▷ 인플레이션에 따른 약가 조정 (불수용)
- ▷ 제네릭·의료기기의 신약 동등 절차 적용 (불수용)
- ▷ 의약품의 강제실시 제한 (불수용)
- ▷ 보건의료서비스 개방 제외 (관철)
- ▷ 양국간 보건의료 제도의 상이성 인정 (관철)
- ▷ 의약품의 비용·효과 대비 적절한 접근성 (affordable access) (관철)

- 의료시장 개방 제외 (영리의료법인 허용, 대체민간의료보험 영향 없음)
-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
- 건강보험제도 및 의약제도의 근간 유지
- 큰 폭의 국민의료비 부담 요인 미발생

### 2. 얻어야 할 것은 얻어 냈음

- ▷ GMP(우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) 상호인정 추진
- ▷ GLP(동물독성시험기준) 상호인정 추진
- ▷ 제네릭 의약품 상호인정 추진
- ▷ 간호사 등 자격/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체계 마련

- 국산 의약품 대외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
- 국산 의약품 해외진출 기반 마련
  - 미국을 포함, 동남아,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 확대
-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대비 진출 교두보 마련

## 12. 국제협력 :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와 남북협력

### □ 국제적 보건분야 협력 필요성

- AI, PI 등 전염병 예방사업 및 대응조치 등 국제협력체계 구축 노력
-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위상 제고

### □ 주요 국제협력 활동 및 추진실적

- ① 제1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및 정례화 : '07.4.7 ~ 4.8
  - AI 및 신종인플루엔자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의 근간이 될 협력각서 체결 및 신종인플루엔자 청정 삼각지역 구축 합의
  - ※ 제2차 3국 보건장관회의 : '08. 10월, 중국 북경 개최
- ② WHO 총회 참석 및 보건 분야 협력 : '06. 5. 13 ~ 5. 16
  - WHO의 올해 표어인 건강투자, 보다 안전한 미래건설(Invest in health, Build a safer future) "와 주제인 "건강투자와 국제 보건 안전 보장(International Health Security)"의 중요성을 역설
- ③ 이종욱 박사 기념사업 추진
  - 한국인 최초로 세계보건기구(WHO) 사무총장에 올라 작년 5월 타계한 故 이종욱 박사를 기리는 이종욱 기념상 제정
- ④ 인도주의 차원의 북한지원사업 및 보건분야 협력 구상
  - 남북보건당국간 협력채널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준비
  - 지속가능한 북한보건의료체계 재건 중장기계획 수립 중
- ⑤ 기타(주요 국제협력실적)
  - 국민연금기금 투자시장 확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서명개방식 참석을 위한 미국방문('07.3.25~4.1)
    - ※ Wall Street 투자확대 설명 및 World Bank와 기금운용협력 MOU 체결
    - ※ 사회투자정책 관련 New America Foundation 및 콜럼비아 대학 강연
  - 한국의 사회투자정책 기조 및 국민연금개혁 좌담회 참석을 위한 일본 방문('07.1.17~1.20)

## 13. 34년만의 의료법 전면 개정 추진

### □ 의료법 개정 필요성

- 의료법은 '73년 이후 임시방편으로 뒀지만 하여 법률의 체계가 복잡하고, 낡은 규제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초래

### □ 법 개정의 방향 및 주요내용

- 기본방향 : 환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강화,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

#### 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

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방·한방·치과 협진 허용
-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할인 허용
-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·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
-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

#### ② 환자 안전관리 강화

- 병원감염관리·당직의료인 기준·진료정보보호 등에 관한 규제 강화

#### ③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

-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
- 종합병원 인정기준 100→300병상 이상 확대
-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 개설 허용

#### ④ 입법 미비사항 신설

- 의료행위의 개념 및 병상·요양병상 용어 정의 신설
-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 신설

#### ⑤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 권한 부여

- 보수교육 강화 및 표준 진료지침 제정근거 신설
- 보수교육이수·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시 중앙회에 징계 요구권 부여